

##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

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.

### 1. 징계대상

가. 성 명: 정 훈 조

나. 생년월일: 1976.10.03.

다. 소 속: (주)가온감정평가법인

(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10(문정동) 가든파이브틀 8층 S-33호)

### 2. 징계내용

가. 징계종류: 견책

나. 효력발생일: 2023.01.30.

다. 사유: 감정평가 과정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 및 거래사례 비교를 부적절하게 하는 등 불공정한 감정평가로 인해 적정가격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함으로써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1항을 위반

2023년 01월 27일

국토교통부장관